

의안번호	2217764
의 퇴 인	정일영 의원
회 답 일	2026. 4. 20.
추계번호	26E13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신흥부부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세액공제 신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59조의4제5항 (특별세액공제)	○ 무주택 신흥부부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세액공제 신설 - 부부합산 가구소득 1억원 이하 또는 홑벌이 가구소득 7천만원 이하의 혼인기간 5년 이내 근로소득자로서 거주 목적의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취득 관련 주택저당차입금 상환이자의 15%(연 3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9조의4제5항 (특별세액공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무주택 신흥부부의 주택저당차입금 상환이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할 경우 소득세수의 변화가 예상됨
-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흥부부가 거주 목적에서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을 위해 지급한 주택저당차입금 상환이자의 15%를 세액공제(연 300만 원 한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개정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이자 관련으로 상기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현행 동 관련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함
 - 현행의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을 위해 지급한 주택저당차입금 상환이자에 대해 근로소득 공제를 하고 있음
 -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한도는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 상환기간 15년 이상 800만원(다만,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 1,800만원,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 2,0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600만원

- 하지만,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관련 현행 소득공제 대상자 중 개정안의 세액공제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구체적인 소득수준별 자료가 필요하나 동 자료가 부재한 상황임
 - 다만, 참고로 최근 3년간(2023~2025년) 대출 실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직접관리자산¹⁾ 중 개정안의 세액공제 대상자(부부합산 가구소득 1억원 이하 또는 홑벌이 가구소득 7천만원 이하의 혼인기간 5년 이내 근로소득자로서 거주 목적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취득 관련 대출자)의 인원수는 6,722명이고 대출 이자상환 금액은 888억원으로 집계됨
-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1)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기준 (금융기관 위탁관리 중인 적격대출, MBS-스왑 등 제외)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박성은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성은	02-6788-4668	ixsepark@assembly.go.kr